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협정팀·반려산업동물의료팀·청년농육성정책팀·그린바이오산업팀·축산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급상향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직급상향 정원 41명(5급 9명, 6급 24명, 7급 5명, 연구관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직급상향 정원 중 1명(농업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농업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23명(5급 11명, 7급 9명, 8급 3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6일까지에서 2027년 6월 16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행정·농업·공업’ 8급과 9급 직렬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는 등 인력 활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0”을 “42”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7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전담관)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홍보전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8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2 다음에 “행정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2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1”을 삭제한다.

별표 9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1 다음에 “행정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2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4”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6 다음에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1”을 삭제한다.

별표 11 중 농업연구관 “3”을 “2”로, 농업연구사 “17”을 “18”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9월 10일”을 “2027년 9월 1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2명(공업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을 “1명(공업주사보 1명)”으로, “각각 별표 11의 공업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을 “별표 11의 공업서기 1명”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11월 30일”을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11월 30일”을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3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 중 “2025년 6월 16일”을 “2027년 6월 16일”로, “2025년 6월 17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전담관) 신설 및 전문경력관 가군(홍보전담관) 삭제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4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u> <u>25년 9월 10일까지</u> 존속한다. ②·제3조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u> <u>27년 9월 10일</u> -----. ②·제3조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u>2명(공업주사보 1명, 농업</u> <u>연구관 1명)</u> 은 2027년 6월 25일 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26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u>각각 별표 11의 공업서기</u> <u>1명, 농업연구사 1명</u> 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1명(공업주사보 1명)</u> ----- ----- ----- ----- ----- <u>별표 11의 공업서기 1명</u>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
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2025년 11
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 제4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6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자유무역협정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청년농육
성정책팀, 그린바이오산업팀 및
축산유통팀은 각각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2027년 11
월 30일-----.
② ~ 제4조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6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7년 11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삭 제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6명을 제외한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사무관 2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1명, 수의사무관 4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
과 같음)

② _____

③

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
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1명, 수
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명)
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
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
정원 41명(농업주사 2명, 농업
주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
사 1명, 수의주사 4명, 농업주사
보 12명, 수의주사보 7명, 행정
주사보 3명, 전산주사보 2명, 농
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1명, 수
의연구사 2명)으로 본다.

-- 2027년 6월 16일-----
-- 2027년 6월 17일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생 략)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
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7년 6월 16일

2027년 6월 17일

④ _____

[illegible]

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
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
도사 3명)으로 본다.

⑥ ~ ⑧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

⑥ ~ ⑧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
과 같음)

[illegible]

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③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u>40</u>	• • <u>42</u>	+2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 • <u>4</u>	• • <u>2</u>	-2
• • <u>전문경력관 나군 (홍보전담관)</u>	• • <u><신 설></u>	• • <u>1</u>	+1
<u>전문경력관 가군 (홍보전담관)</u>	• • <u>1</u>	• • <u><삭 제></u>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u> <u>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24</u>	+24
<u>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u> <u>공업서기</u>	<u>24</u>	<u><삭 제></u>	-24
· ·	· ·	· ·	
<u>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u> <u>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11</u>	+11
<u>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u> <u>또는 공업서기보</u>	<u>11</u>	<u><삭 제></u>	-1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서기·농업서기·공업서기</u>	<u><신 설></u>	<u>24</u>	+24
<u>또는 전산서기</u>			
<u>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u>	<u>24</u>	<u><삭 제></u>	-24
<u>공업서기</u>			
·	·	·	
·	·	·	
<u>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공업</u>	<u><신 설></u>	<u>11</u>	+11
<u>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u>	<u>11</u>	<u><삭 제></u>	-11
<u>또는 공업서기보</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농업연구관			<u>3</u>		<u>2</u>	-1
농업연구사			<u>17</u>		<u>18</u>	+1
	.		.		.	
	.		.		.	